

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비 환불 규정

1. 교육과정별 환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

교육과정	환불사유 발생일	환불금액	비고
법정교육 -신규종사자, -정기종사자, -보수교육, -방재교육	교육 시작전	교육비 전액	• 교육 종료 후, 수료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환불 불가
	교육 시작 이후	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차기교육 수강기회(1회) 제공, 차기교육은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.	
RI면허시험 대비교육/ 전문과정	교육 시작 1주일 전	교육비 전액	• 교육비는 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• 교재 지급시기 : 접수 마감후 교육당일 배포함 • 정원에 도달한 경우 타교육생의 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시작후에는 환불 불가
	교육 시작 1일 ~ 6일 전	교육비의 10% 공제한 금액	
	교육 시작후 교육기간 1/2경과전	교육비의 50% 공제한 금액	
	교육 시작후 교육기간 1/2경과후	반환하지 아니함	
통신교육	교육 시작 1주일 전	교육비 전액	
	교육 시작 1일 ~ 6일 전	교육비의 10% 공제한 금액	
	교육 시작 후	교재비와 당해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합한 금액	

2. 제1항의“환불사유발생일”의 기준은 교육생(또는 기관)이 [환불신청서(별지1호서식)]가 협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.
3. 협회는 교육비 환불시 송금 수수료등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다.
4. 협회는 교육비의 과오납등 착오에 의한 교육비 납부가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.
5.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 환불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: 협회는 환불신청서 접수 후 결제(대행)시스템을 이용하여 환불처리
 - ②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: 협회는 환불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환불처리